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제3판
(2022. 1. 27.)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일러두기]

○ 법적 근거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해당 감염병의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응함

○ 대응방향 관련

- 이 지침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발생 상황, 역학조사 결과 및 관련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장사 방법, 장사 절차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이 지침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임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다른 지침과의 관계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 학회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 법령명 약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예방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법」

2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개정사항
I. 개요	개정	법적 근거 및 원칙에 대한 개정 사항 안내
	신설	코로나19 시신 관련 감염위험과 예방 신설
II. 범위 및 역할	개정	범위 및 역할 일부 개정
III. 단계별 조치사항	개정	임종 각 단계별 대응 관련 기관별 역할 및 대응
	신설	임종 단계별 조치사항 세부항목 신설
부록	개정	부록 1.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관련 법적근거 주요 내용 부록 2.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참고사항 부록 3.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부록 5. 전국 화장시설 현황 부록 6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현황
문고 답하기	개정	자주 묻는 질문

[목 차]

I. 개요	3
가. 법적 근거	3
나. 목적	3
다. 원칙	3
라. 시신 관련 감염위험과 예방	3
II. 범위 및 역할	4
가. 범위	4
나. 역할	4
III. 단계별 조치사항	5
가. 임종 예상 시	5
나. 임종 후	5
다. 장례	8
IV. 행정사항	10
〈기관별 행정사항〉	10

4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부록 목차]

부록 1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관련 법적근거 주요 내용	12
부록 2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참고사항	14
부록 3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17
부록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3판) 발취	24
부록 5 전국 화장시설 현황	31
부록 6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현황	33

[묻고답하기 목차]

자주 묻는 질문

Q1. 코로나19 사망자는 꼭 화장을 해야 하나요?	38
Q2. 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을 접견할 때 유족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38
Q3.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을 위한 장례식에 참석하면 감염될 위험이 있나요?	38
Q4.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참석 시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8
Q5. 코로나19 사망자의 유품을 간직할 수 있나요?	39
Q6.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39
Q7.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수습시 시신백은 꼭 사용해야 하나요?	39
Q8. 코로나19 시신백을 이송하거나 입관된 상태로 운구하는 경우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어떻게 하면 되나요?	39
Q9. 코로나19 시신으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있나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식장 이용 후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이용을 기피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을까 우려됩니다.	40

I 개요

가. 법적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의 장례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에 따라서 대응한다.

참고자료 [부록 1]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관련 법적근거 주요 내용

나.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애도, 장례지원 인력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예방 규정에 따른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원한다.

다. 원칙

-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고 유족의 뜻을 존중하여 장례지원 실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사방법을 시행
- 장례절차에 따른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수행

< 코로나19 시신의 장사방법 및 절차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가. 장사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권고

나. 장사절차: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후 장례 후 화장 권고

▶ 장사 절차 수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준수

라. 시신 관련 감염위험과 예방

- (시신 접촉) 시신의 체액이 눈·코·입 등 점막에 직접 접촉할 경우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인보호구 4종**(KF94 동급이상의 마스크,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을 착용하며, 모자 등은 필요시 선택 착용, **손위생** 철저
- (시신백 이송, 관 운구) 시신백 및 입관된 경우 감염의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하여 추가적 감염예방 조치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II 범위 및 역할

가. 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확인되어 격리기간 중 사망자*의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전반

* 사망 후 코로나19 확진된 경우도 포함하며,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된 이후의 사망은 해당되지 않음

나. 역할

○ 각 기관 및 장사시설(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간 연계체계 구축하여 역할 수행

기 관	역 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사지원 관련 방역대책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장사시설 협업체계 유지 ▶ (장사지원센터/1577-4129) 장사시설 예약지원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및 중앙 사고수습본부 요청 시 현장지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례지침 개정 및 관리, 장례비용 지원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족에게 장사방법 및 절차▶ 설명, 유족의 선택사항 확인 ▶ 사망자 연고자에게 「장사법」 및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선화장, 후장례 ②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 장사시설 이동 시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지역 장례식장 등 협조 통해 지원) 개인보호구▶ 지원 ▶ 시신 직접 접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호구 4종(KF94 등급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접촉 상황에 따라 보호구 추가 선택 ▶ 시신백 수습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용 마스크(필요시 일회용 장갑)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비(의료기관, 운구차량, 장사시설 등) 방역조치 점검 등 유관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장례식장 등) 상황 통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신 처리 ☞ 참고자료 [부록 2]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참고사항
장례식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신처리 지원, 장례식장 안치, 장사시설 운구 지원, 장례절차 진행 ☞ 참고자료 [부록 2]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참고사항 ▶ (사)한국장례협회 : 장례식장 및 운구차량 섭외 등 원활한 장례절차를 위한 지원·협조
화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사망자와 코로나19 사망자 구분없이 일상적인 예약 및 화장 운영 ※ 마지막 시간으로 배정 등의 추가적 방역조치가 불필요하므로 일반적 절차에 준하여 화장 시행

Ⅲ 단계별 조치사항

가. 임종 예상 시

○ (의료기관)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 대기 요청한다.

- (면회) 가족이 원할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 면회 가능

- ▶ (환자와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4종 보호구 착용
- ▶ (거리(1m 이상) 유지하며 접촉없는 경우) 마스크 착용, 해당 기관의 입실규정에 따라 추가

- (설명) 가족에게 사망 후 시신처리 방법 등 임종 후 절차▶에 대해 설명

- ▶ 유족 참관자 범위 및 방법, 사후 시신 수습 과정과 코로나19 장례절차에 대해 안내

- (보고) 보건소 등에 상황 통보

▶ 임종임박 환자 가족에 대한 안내문(예시)

• 다음의 감염예방 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1. 보호구 착용 유지

- ✓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 보호구 착용 전 손위생을 합니다.
- ✓ 면회 중 화장실 사용은 불가하니 보호구 착용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 마스크는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 마스크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안내되는 가운, 장갑, 안면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 보호구는 면회를 마칠 때까지 착용을 유지하며, 마스크와 안면보호구는 만지지 않습니다.

2. 접촉 최소화

- ✓ 의료진이 안내에 따라 해당 환자 병실만 출입합니다.
- ✓ 환자와 접촉은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료장비나 병실 내 물품은 만지지 않습니다.
- ✓ 가급적 조용하고 차분히 면회합니다.

3. 면회 종료 및 보호구 탈의

- ✓ 면회가 끝나면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탈의 장소에서, 보호구를 탈의합니다.
- ✓ 병실에서 보호구를 탈의하지 않습니다.
- ✓ 보호구 탈의 후 반드시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나. 임종 후

◆ 필수사항

: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족과 고인의 마지막 작별을 고향 수 있도록 충분한 애도기회 보장

6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 (보건소) 유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장사절차 중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유족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의 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 정확히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가. 장사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 권고

나. 장사절차: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 권고

◆ 장례절차 예시

1) 선 화장, 후 장례

→ 절차: 의료기관(사후처치, 시신백 수습, 입관)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2)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

→ 절차: 의료기관(사후처치, 시신백 수습) → 장례식장(장례, 입관)→ 화장시설(화장)

▶ 시신백 수습후 시신백 개방과 시신접촉 최소화하며, 시신백 개방시 보호구 착용, 손위생, 주변 환경표면 소독 실시

- (의료기관)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소(개인보호구 지원, 방역소독 등) 등에 상황 통보, 유족에게 사망 설명하고 시신처리 시점을 협의한다.

- ① (애도) 유족에게 애도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유족이 사망자와 접촉(손을 잡는 등)을 원할 경우 반드시 시신의 사후 처치를 수행한 후 가능함을 설명하고, 감염예방절차▶를 교육한 후 시행한다.

▶ 개인보호구 4종 착용과 탈의방법 및 탈의 후 흐르는 물에 손씻기 등

- 유족이 시신 접촉 후 개인보호구 탈의와 손씻기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② (사후 처치) 유족과 협의된 시점에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사후 처치▶ 한다.

▶ 시신의 사후처치

- 개인보호구(방수성 긴팔가운,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눈보호구 또는 고글, 장갑, 필요시 신발덮개 등) 착용
- 시신의 모든 튜브, 배액관, 카테터 등 제거
 - 날카로운 장치를 제거할 때는 찢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제거 즉시 전용 폐기물함에 폐기 (보철물, 이식물 등은 제거하지 않음)
- 시신의 배액 부분을 포함한 외부 상처는 소독하고 체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표면을 비투과성 물질로 드레싱 처치
- 구강 및 비강의 분비물은 필요한 경우 부드럽게 흡인하여 제거
- 체액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신의 구강, 비강 및 직장을 막고, 피부에 남은 체액은 닦아낸 후 건조

참고자료 [부록 2]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참고사항

- 사망자가 의사환자인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대기하거나 확진환자에 준하여 시신처리 후 안치실에 안치한다.

▶ 검사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처리

- ③ (시신백에 시신수습▶) 유족의 애도 여부를 최종 확인한 다음 시신백에 시신을 수습한다.
- 시신을 시신백으로 수습할 때 참여하는 인력은 개인보호구 4종을 착용한다.
 - 시신백의 겉면이 시신의 체액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시신백의 겉면과 시신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옮긴다.
 - 시신백의 지퍼를 닫은 후 겉면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닦는다.
 - 이송카트에 체액 등 오염이 있는 경우 소독제로 닦는다.
 - 시신백의 겉면 소독 이후 시신백 이송 등 수행인력은 별도의 감염관리 조치가 요구되지 않으며 기본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다.

▶ 시신백에 시신수습 절차(예시)

- 시신백의 외피를 이송카트에 씌운다.
- 시신백의 내피를 외피위에 올려 지퍼를 열어 놓는다.
- 이송카트의 높이를 조정한다.
- 시신을 내피에 수습한다.
- 내피의 지퍼를 닫는다.
- 내피의 겉면을 닦아 소독한다.
- 외피의 지퍼를 주의깊게 단단히 닫는다.
- 외피의 겉면을 닦아 소독한다(외피의 지퍼가 천소재일 경우 지퍼를 따라 방수 테이프를 덧부착한다).
- 이송카트 등에 체액이 묻은 경우 소독제로 닦아 소독한다.
- 보호구를 탈의하고 손씻기를 한다.

※ 시신백 사용시 고려사항

- 시신의 사후 처치로 체액 유출이 없다면 1겹 시신백 사용이 가능하나, 특별상황▶에는 이중 시신백의 사용을 권고하며, 시신백 바닥에 흡습포를 확인하고 체액 유출이 많은 등 필요한 경우 흡습포 추가

▶ 체액 과다노출 또는 장거리 이송, 대량의 시신 처리의 경우

- 시신백의 재질은 미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플라스틱 이상으로 견고하여야 함
 - ※ U자형 지퍼식은 중앙 지퍼식보다 시신과의 접촉이 적음
- 시신의 안면부를 투명 재질로 제작된 것은 시신백을 열지 않고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유족에 대한 배려를 위해 고려할 수 있음

8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④ 해당 장소는 의료기관 내 규정에 따라 소독·환기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고

○ (장례식장 등) 시신수습 및 이송

① (시신백에 시신 수습을 함께 하는 경우) 개인보호구 4종(1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KF94 동급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을 착용한다.

▶ 보건소는 장례식장 등에 개인보호구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개인보호구 우선 지급

② (시신백 처리된 상태로 인수받는 경우) 기본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장갑(필요시) 착용하고 이송한다.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을 시행하도록 안내, 유족 참여현황 파악, 방역수칙 설명(필요시 개인보호구 지급) 한다.

- 필요 시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확보

다. 장례

○ (장례식장 등) 시신백으로 수습된 시신을 이송, 장례식장 안치, 장례 및 장사시설로 운구 지원하며, 유족이 선택한 장례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선 화장, 후 장례인 경우

- 시신백은 닫혀진 상태를 유지하여 입관하고 화장시설로 운구한다.

2) 장례 후 화장인 경우

① (안치) 시신백은 닫혀진 상태를 유지하여 안치하고, 개방을 최소화한다.

② (입관) 유족이 입관을 참관하는 경우 시신백을 개방하지 않을 때에는 유족은 마스크(필요시 장갑)를 착용하고, 시신백을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참관 시 유족이 시신백을 개방하여 고인을 보기 원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설명하고, 사전 준비 및 방역조치▶ 철저히 하에 시행한다. 유족은 시신을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사전 준비 및 방역조치**

- 장례업무 담당자는 **개인보호구 4종**을 착용한다.
- 시신백의 얼굴 부분만 개방하여 시신백 개방을 최소화하며, **얼굴 이하 전신은 시신백 위로 린넨포** 등을 이용하여 덮어 준비한다.
- 시신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복부나 흉부가 압박되어 공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 유족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시신과 시신백을 접촉하지 않으며 고인을 접견한다.
* 만약 유족이 시신을 접촉할 경우 개인보호구 4종의 착탈의 방법을 교육받고 착용한다.
- 장례업무 담당자는 업무 중 (본인의) 눈이나 얼굴을 만지지 않으며, 다른 활동을 함께 하지 않는다.

(업무 수행 후)

- 업무를 끝낸 후 순서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보호구를 탈의한다.
- 마스크는 마지막 단계에서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손씻기를 한다.
- ★ 시신 접촉 관련 업무를 하는 장례업무 담당자는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사용과 착탈의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훈련받는다.

☞ **참고자료** [부록 3]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 ③ (운구) 발인 후 화장시설로 운구한다. 운구에 참여하는 인력은 기본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필요시 장갑)를 착용한다. 유족이 운구를 원하는 경우 동일한 방역수칙 하 가능하다.

▶ 입관 후 운구시 추가적 방역조치는 요하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에 따름

- 장사 절차 진행 시 문상객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에 따름

- (화장시설) 고별장소에서 유족의 애도를 지원한다. 입관 후 시신 운구·화장에 따른 추가적 방역조치는 요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한다.

- 마지막 시간으로 배정 등의 추가적 방역조치가 불필요하므로 일반적 절차에 따른다.

-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등의 방역소독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안내에 따름

- (시·도 및 시·군·구)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동행 유족·운구요원·장사요원 등에게 방역수칙 안내(필요시 개인보호구 지급), 확인한다.

- 장례종료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결과 보고(시·도)

IV

행정사항

〈기관별 행정사항〉

기관	내 용
<p>중앙사고수습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례지원반 운영을 통한 장사지원 협업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사고수습본부-지자체 등 연계·협조체계 구축 운영, 상황 전파 등 사망자 화장시설 예약 지원 및 장사시설 이용안내 <p>▶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77-4129</p>
<p>중앙방역대책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 개정 및 관리, 장례비용 지원▶ <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에 따름</p>
<p>시·도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족 및 장례지원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및 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설 화장시설,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등 운영·관리체계 유지 <p>▶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 우선 이용, 없는 경우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보호구 지원 및 방역조치 지도·점검 장례 종료시까지 장례지원 및 진행상황 확인, 결과 보고 인도적 사유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 <p>▶ 자가격리 중 임종, 장례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도록 격리대상자에게 안내 담당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구급차 권장)으로 자가격리대상자와 함께 이동 <p>▶ 본인의 배우자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p> <p>▶ 세부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시신의 장례관리 대상자에 적합한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환자 격리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코로나19 장례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장례절차에 따름 <p>▶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 우선 이용, 없는 경우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이용</p>

부 록

부록 1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관련 법적근거 주요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20조의2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구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고 부담 경비	제67조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5의2. 제20조의2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
위임 및 위탁	제76조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제17조의2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사방법이 제한되는 시신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감염병과 관련된 감염병환자등(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신으로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감염병의 공고를 하기 전에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을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사방법 제한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은 구술로 한다. 이 경우 장사의 제한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장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구분	주요 내용
고시	가. 장사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 권고 나. 장사절차: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 권고 다. 시신 처리 및 장례관리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라.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록 2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참고사항

< 코로나19 시신의 감염위험과 감염예방 방법 >

- ▶ (시신의 감염위험) 코로나19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시신의 경우 감염위험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처리한 후 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없으나, 시신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 배출이 가능하므로 시신을 접촉하는 행위 시 적절한 방역조치 필요
- ▶ (장례시 감염요인과 예방방법) ❶시신을 닦거나 옷을 입히는 등 위생관리시 처리자의 눈·코·입 등 점막에 시신의 체액이 닿는 경우 감염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접촉주의 필요(장갑, 긴팔가운, 마스크, 눈보호구), ❷시신에 대한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부검 또는 시신방부처리 등은 가급적 금하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공기주의 적용(KF94이상의 마스크, 모자, 신발커버, 시간당 10회 이상 환기·음압 필요)

1. 일반 권장사항

가. 감염예방 수칙

- 장례 업무를 하는 사람은 감염예방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받고, 올바른 손위생과 개인 보호구 착용의 방법에 대해 훈련받는다.
- 시신의 혈액 또는 체액이 업무자의 경피 상처 또는 점막에 접촉된 경우 흐르는 물로 세척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며, 노출된 직원은 노출 후 관리를 위해 즉시 진료를 받는다.
- 개인보호구, 손소독제, 소독티슈 등 방역물품은 사전에 구비하여 적소에 비치한다.
- 오염된 환경 표면은 환경부에 승인·신고된 코로나19 살균력이 입증된 소독제▶로 소독한다.

▶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소독제를 준비하고,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후, 물에 적신 천으로 닦아낸다.

▶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의 경우 1,000ppm 희석액 사용하고 1분 이상 소독제의 표면 접촉 유지 필요: 5% 차아염소산나트륨 10 ml + 물 490 ml

- 금속표면은 70% 알코올로 닦을 수 있음
- 혈액 및 체액으로 눈에 띄게 오염된 표면은 소독제로 일정 시간 접촉 후 닦아낸다.

▶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의 경우 5,000ppm 희석액 사용하고 1분 이상 소독제의 표면 접촉 유지 필요: 5% 차아염소산나트륨 50 ml + 물 450 ml

※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은 매일 새로 희석해서 사용한다.

나. 폐기물 관리

☞ 참고자료 [부록 4]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 발취

다. 세탁물 관리

- 사용된 모든 린넨은 표준격리로 처리
- 사용된 린넨은 린넨을 취급하는 사람의 오염을 방지하고 해당 구역에서 잠재적으로 오염된 보풀로 인한 에어로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휘젓기로 최대한 적게 다루어야 함
- 혈액 또는 체액으로 오염된 린넨은 뜨거운 온도에서(70℃ 이상) 세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 준비한 희석한 가정용 표백제(표백제 1: 물 49 혼합)에 세탁 전 30분 동안 담가둬야 함

2. 환경관리

가. 안치실, 염습실

- 항상 깨끗하고 적절하게 환기되어야 하며, 조명이 적절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실시
- 부검실, 안치실, 유족 참관실에서는 흡연, 음주, 식사가 금지
- 코로나19 시신은 식별 레이블 및 범주 태그로 식별가능하게 해야 함
- 시신은 입관 전까지 시신백에 보관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방하고 개방범위와 시간을 최소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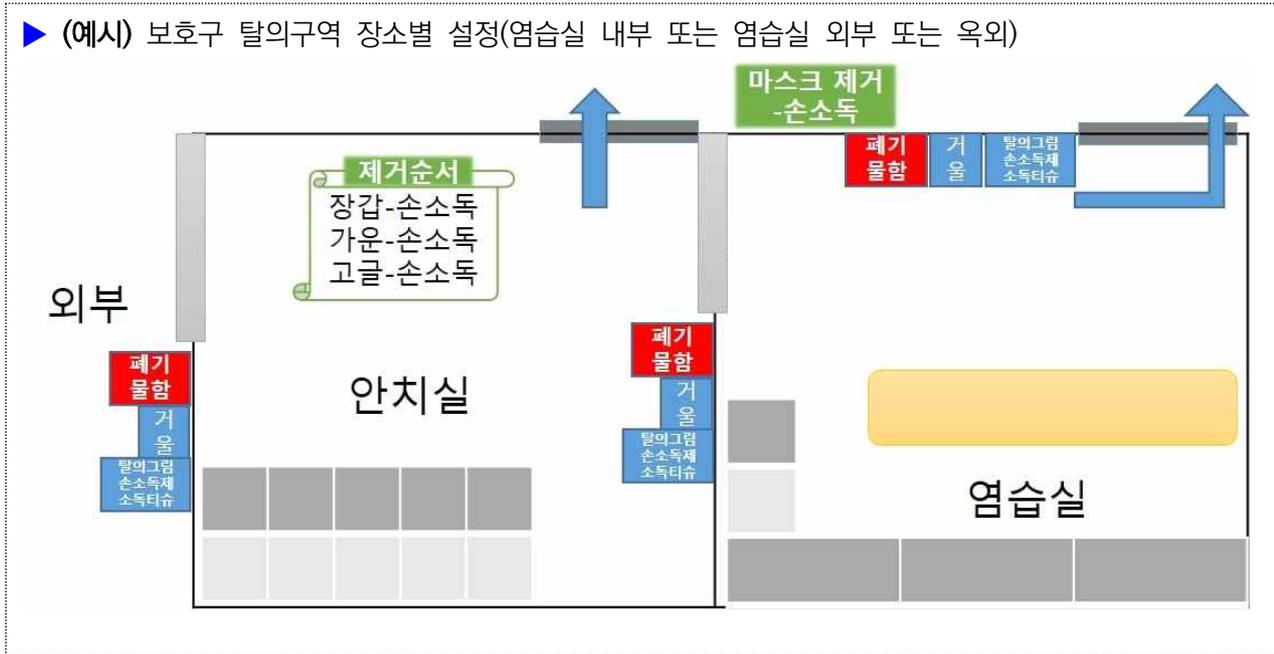
나. 부검실

- 모든 시신은 잠재적인 감염원으로 간주하고 부검 수행 시 표준주의 원칙을 지켜야 함
- 부검 시 침습적인 절차에 의해 체액으로 인한 감염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며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함
 -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권장되는 기술과 절차를 사용하여 부검의에 의해 수행
 - 부검실에서 허용되는 인원은 수술과 직접 관련된 인원으로 제한
 - 시신백 외부는 환경부에 승인된 코로나19에 유효한 살균·소독제로 닦아서 건조시킴

다. 보호구 탈의구역

16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 충분한 공간(팔을 뻗었을 때 접촉되는 면이 없도록) 확보
- 구비물품; 전신거울, 소독티슈, 손소독제, 폐기물함, 탈의 절차(게시)
- 거울앞에서 절차에 따라 제거하여 폐기물함에 폐기(마스크는 장소이동하여 제거)
- 사용 후 충분히 환기, 소독 실시



부록 3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 **적용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
 - 검역, 이송, 역학조사, 선별진료, 진료, 처치,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 검사, 수술, 기구 관리, 환경관리, 시신관리 등

□ **주요내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 선택, 착·탈의 및 주의사항, 의료폐기물로 배출



□ **사용 원칙**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또는 공기매개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
-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쉼터 등)

18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보관하지 말고 폐기
-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상황별 권장범위

-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눈, 손,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N95 또는 KF94 이상),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
-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일회용 장갑 (Glove)	접촉	-손 오염 방지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 -파우더 알려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Gown)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튼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전신보호복 (Coveralls)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튼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덧신 (Shoe covers)			
장화 (Boots)	혈액, 체액이 신발에 튼	-신발덮개 대신 착용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노출위험에 따라 선택	
모자 (Hair cap)	머리의 오염	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고글 (Goggle)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튼	-눈의 점막 오염 방지 -고글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안면보호구 (Face shield)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튼	-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고글 대신 착용 -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호흡기보호구 :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적용상황 예 : • 의심/확진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의료 종사자,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 • 기침유도 시술 시 •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호흡기보호구 : PAPR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 전지충전, 필터교환, 장비 소독 등 철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함 - 파손,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전 수리,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20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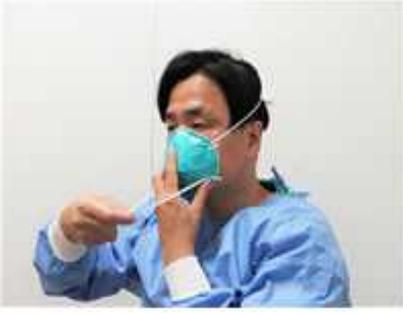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일부 발취)

구분	상황, 행위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례	시신 접촉		●	●	●	●
	시신백 이송, 관 운구	●		● (필요시)		
청소·소독	청소·소독		●	●	●	●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광범위하게 물이 튀는 작업 등 에어로졸 발생가능한 상황에서는 필요시 전신보호복(덧신포함) 착용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

○ 개인보호구 4종 착의 예시 순서

				
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	2. 손 위생을 시행한다.	3. 가운을 입는다.		
				
4. 마스크를 착용한다.	5.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	6.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7.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8.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 (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

22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 개인보호구 4종 탈의 순서

				
<p>1. 장갑을 벗는다.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p>		<p>2. 속장갑을 착용한 경우 속장갑을 소독하고, 속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3.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p>		<p>4.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5. 고글 혹은 안면보호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p>	<p>6.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7. 마스크를 제거한다.</p>		
				
<p>8.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9. 속장갑(착용한 경우)을 제거한다.</p>			

□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원칙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쉼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 상자에 바로 버림

부록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3판) 발취

▶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 격리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발생 및 보관]

- (배출)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병원내 이동 최소화)하고 밀폐(전용봉투+전용용기 2중 밀폐)

- ▶ 폐기물 투입 전과 밀폐 후 소독 처리
- ▶ 전용봉투가 찢어지거나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없는 의료진 도는 폐기물 수거업체 등이 사용한 개인보호구 (마스크, 보호복) 등에 대해, 합성수지 전용용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합성수지 전용용기 대신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음

- 확진환자의 남은 음식물도 구분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 후 처리

- ▶ 병원 전체가 격리(동일집단격리)되어 발생 음식물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소독 후 일괄 소각 처리(지자체 공공소각장 또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 가능 직물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 세탁 후 재사용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세탁
- ▶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
→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소독 안내 지침 참고

- (보관) 해당 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 병원 내 보관 최소화

- 병원내 보관 시 지정된 보관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 조직물류 형태는 전용 냉장시설(4℃ 이하)에 반드시 보관하고, 부패위험이 없는 격리 폐기물도 최대한 냉장보관이 원칙
- 보관창고는 매일 소독하고,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은 구조 및 외부인 출입 제한

[수집·운반]

-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한 상태로 임시 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하여 소각처리
- 밀폐된 적재함에서 운반 중 4℃ 이하 유지, 적재함 사용 시마다 약물소독

[소각처리]

○ 해당 폐기물 입고 즉시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로 투입

▶ 처리 상황과 최종 처분 여부는 환경공단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현행규정보다 강화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방안]

구분	배출자 보관	운 반	처 리
격리폐기물 현행규정	○ 7일까지 보관 ○ 합성수지 전용용기 ○ 전용 보관창고 (조직물류 냉장보관) ○ 보관창고 소독	○ 냉장운반 ○ 임시보관(2일)	○ 처리기한 2일 ○ 전용보관 창고 (조직물류 냉장보관)
격리폐기물 관리강화	○ 당일 위탁처리 (1~2일 이내 보관) ○ 냉장보관 원칙 ○ 전용용기 투입전·후 소독	○ 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 ○ 사용시마다 차량약물 소독	○ 당일 소각처리

▶ 단, 특별자치도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 지역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보관(4일 이내)하되 신속 운반·처리(2일 이내)

□ 생활치료센터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확진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격리의료폐기물로 ①소독·밀봉 배출, ②상시소독, ③전량 일일소각 처리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생활 및 의료지원이 실시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간주

- (배출) 환자가 직접 폐기물을 소독하고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문전 배출
- (수거·보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관리인력이 문전 수거 및 소독 후 지정한 별도 (임시) 보관장소▶에 보관

▶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별도 공간, 임시 컨테이너 등)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약물로 소독하여야 함

- (운반·처리) 지정된 수집·운반업체에서 보관장소에 보관된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업체에 당일 운반하여 소각처리

26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 확진환자와의 접촉 없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강화하여 소각처리
 - 센터 내 격리의료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소독·밀봉하여 전량 일일소각 처리하되 합성수지 전용용기가 아닌 골판지 전용용기 사용
-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처리업체 지정·관리
 - 유역·지방환경청은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처리업체를 지정하고, 일일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확인 후 환경부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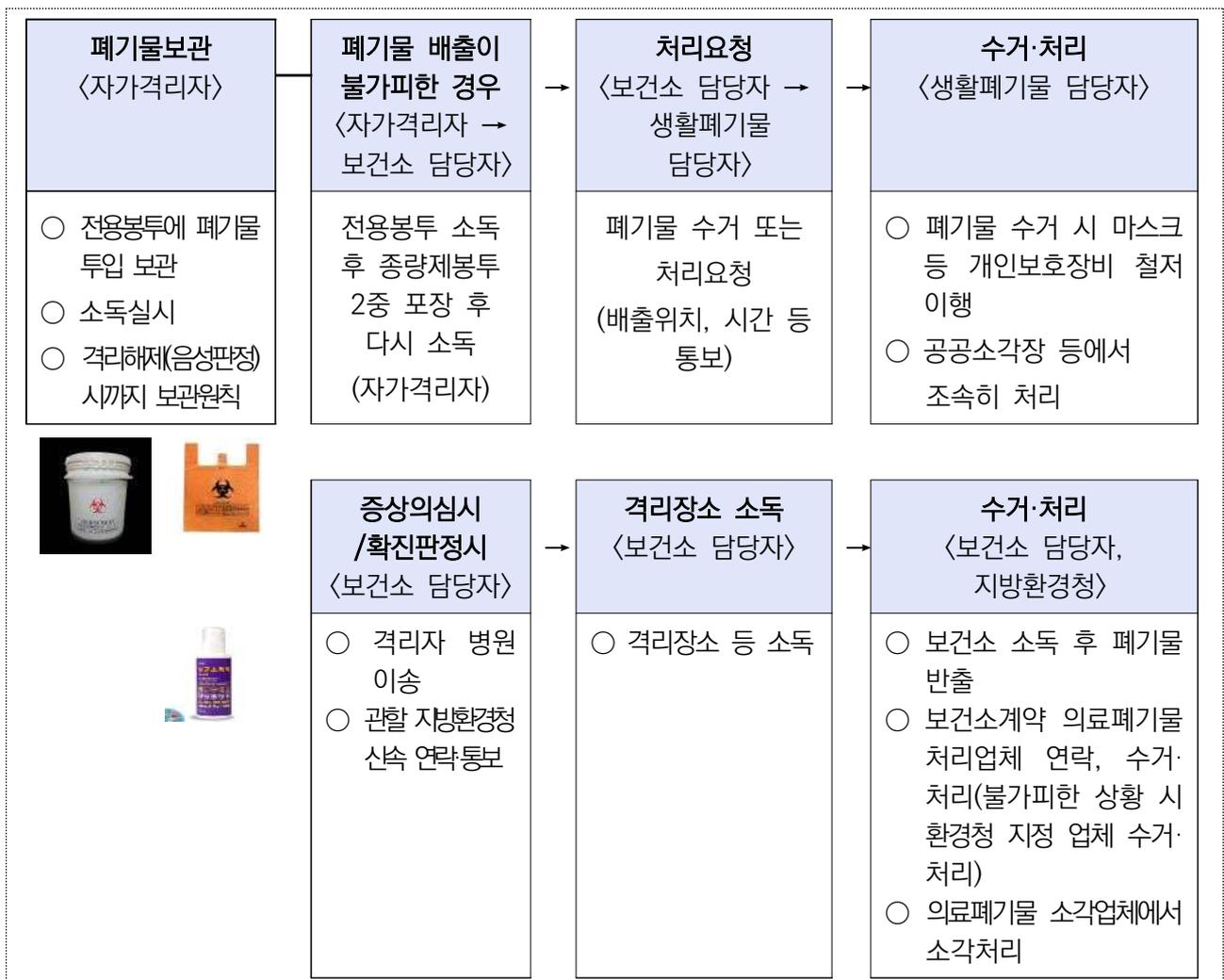
□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자가격리자에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을 무상지급
 - 유역·지방환경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봉투형 전용용기, 소독약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 발생된 폐기물을 매뉴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처리
 - ① 증상 미발생 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 (배출) 배출자제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하며, 자가 격리자는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하여 배출
 - ▶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2중 밀폐
 - (수거·처리)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하는 지자체 보건담당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생활폐기물로 소각처리
 - ▶ 다만 지자체 여건상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이 소각이 아닌 매립 등의 방식일 경우 기존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
 - ②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또는 확진판정 받은 자가 격리장소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의 경우
 - (배출)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
 - (수거·처리) 보건소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
 - ▶ 발생량 과다로 당일처리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지방(유역)환경청에 연락하여 처리
 - ▶ 자가격리가 해제된 경우(음성 판정)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중인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여 소각처리

□ 확진환자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 환자에 노출된 지역은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적정 소독 처리한 후, 다음날까지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권고하며, 관련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소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진복, 마스크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자가격리자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 폐기물 종사자 지원 및 사고예방

- (폐기물 종사자) 의료폐기물 지도·단속 요원, 코로나-19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종사자는 개인보호구▶ 철저 사용으로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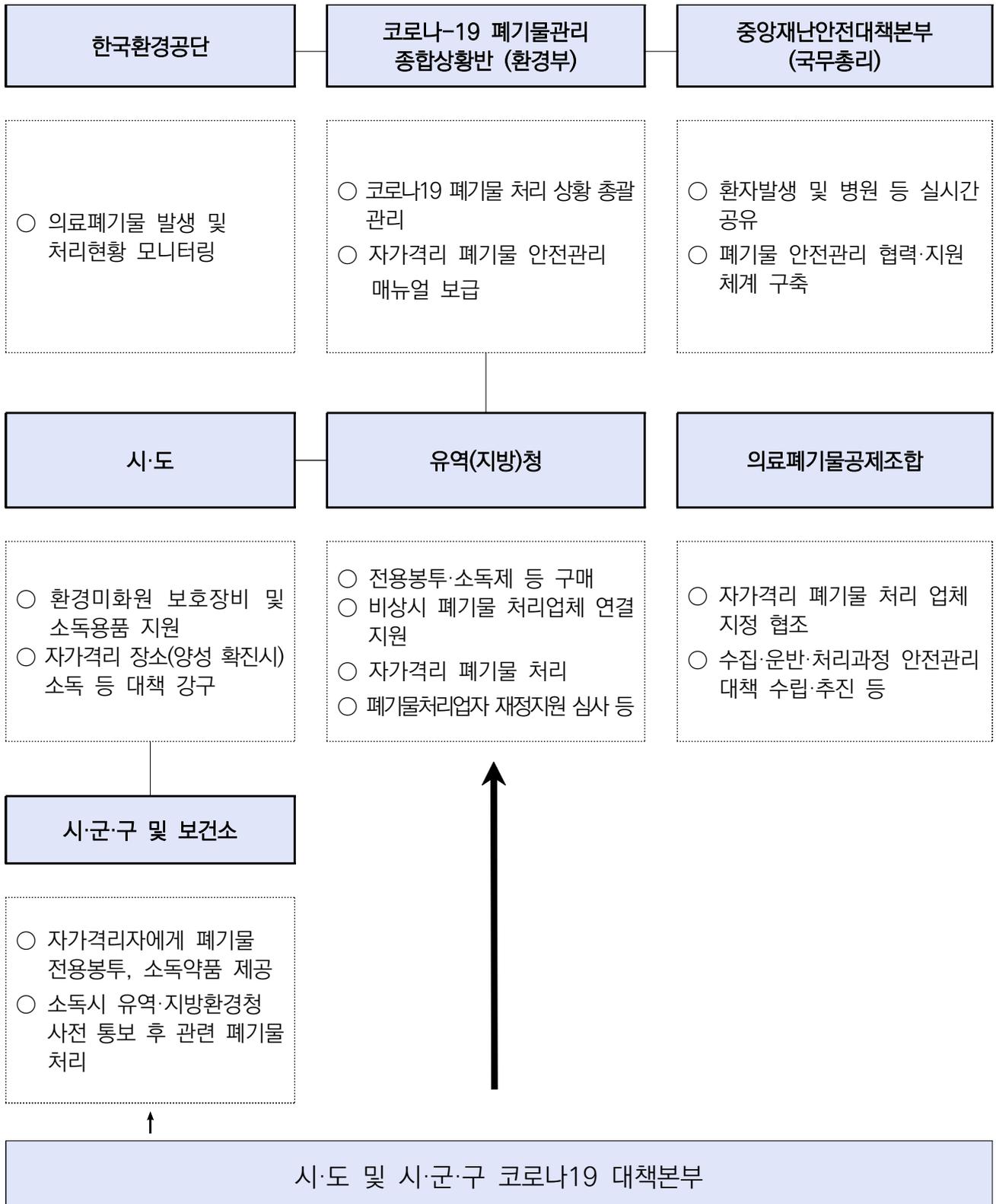
▶ 개인 소독약품, 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및 일회용 가운 등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권장하는 보호구 착용

- (환자이송 119 구급대 등) 코로나-19 의심환자 등의 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시·도)
- (운송사고 예방)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소독 강화, 안전운행 수칙 준수 및 사고 예방 관리 철저(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 (특별점검) 기관장 전담제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 종합병원 : 유역·지방환경청
 - 종합병원 외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지자체
 - 수집·운반업체, 소각처리업체 : 유역·지방환경청 1:1 전담 관리

부록 4
(붙임1)

코로나바이러스-19 의료폐기물 관리 안내도

[관리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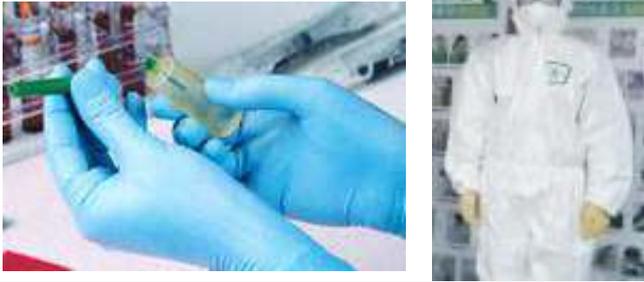
부록 4
(붙임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개인보호장비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p>의료폐기물 전용봉투</p>	<p>합성수지 전용용기</p>	<p>골판지 전용용기</p>

□ 개인보호구

<p>장갑 보호복</p>	
<p>마스크</p>	
<p>고글/안면보호대</p>	

부록 5

전국 화장시설 현황('22.1월 기준)

연번	시도	시군구	화장시설	전화번호 (대표번호)	비고
계	17	60	62		1(시설)
1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	02-3498-2581	
2	부산	금정구	부산영락공원	051-790-5000	
3	대구	수성구	대구명복공원	053-743-3880	
4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032-456-2320	
5	광주	북구	광주영락공원	062-572-4384	
6	대전	서구	대전시정수원	042-610-2300	
7	울산	울주군	울산하늘공원	052-255-3800	
8	세종	세종시	은하수공원	044-850-1330	
9	경기	수원시	수원시연화장	031-218-6500	
10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6	
11		성남시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031-754-2268	
12		용인시	용인평온의숲	031-329-5900	
13		화성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031-240-9200	추가
14	강원	춘천시	춘천안식원	033-261-7314	
15		원주시	하늘나래원	033-749-4870	
16		강릉시	솔향하늘길	033-660-3858	
17		동해시	동해시승화원	033-522-1451	
18		태백시	태백시화장장	033-550-2844	
19		속초시	속초시승화원	033-635-7023	
20		정선군	정선하늘터	033-560-3460	
21	충북	인제군	인제종합장묘센터	033-462-6989	
22		청주시	청주시목련공원	043-270-8578~9	
23		충주시	충주시시설관리공단	043-870-7867	
24	충남	제천시	제천시영원한쉼터	043-644-6613	
25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041-529-5141	
26		공주시	공주나래원	041-840-8980	
27	전북	홍성군	홍성추모공원	041-630-9820	
28		전주시	전주시승화원	063-239-2690	
29		군산시	군산시승화원	063-454-7950	
30		익산시	익산시정수원	063-859-3840	

32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연번	시도	시군구	화장시설	전화번호 (대표번호)	비고	
31	전북	정읍시	서남권추모공원	063-539-6726		
32		남원시	남원시승화원	063-632-5874		
33	전남	목포시	목포추모공원	061-272-0095		
34		여수시	여수시승화원	061-659-1795		
35		순천시	순천시립추모공원	061-749-6168		
36		광양시	광양시화장장	061-762-4449		
37		곡성군	청계원	070-8677-2232	사설	
38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화장장	061-840-0586		
39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061-530-5141		
40		경북	포항시	포항시우현화장장	054-270-5815	
41	포항시구룡포화장장			054-270-5960		
42	경주시		경주하늘마루	054-779-8547		
43	김천시		김천시화장장	054-430-1300		
44	안동시		안동장사문화공원	054-850-4780		
45	구미시		구미시추모공원	054-480-2320		
46	영주시		영주시화장장	054-633-9473		
47	상주시		상주시승천원	054-537-6393		
48	문경시		문경예송원	054-550-6507		
49	의성군		의성군공설화장장	054-833-1103		
50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054-791-1888		
51	울진군		울진군립추모원	054-789-6109	추가	
52	경남		창원시	창원시립상복공원	055-712-0920	
53				창원시립마산화장장	055-712-0224	
54		진주시	진주시안락공원	055-759-3672		
55		통영시	통영시추모공원	055-650-4883		
56		사천시	사천시누리원	055-831-4590		
57		김해시	김해추모의공원	055-337-3946		
58		밀양시	밀양시공설화장시설	055-359-4634		
59		함안군	함안하늘공원	055-585-7182		
60		고성군	고성군공설화장장	055-670-2923		
61		남해군	남해추모누리	055-860-3681		
62	제주	제주시	양지공원	064-702-4065		

부록 6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현황('22.1월 기준)

시·도	시·군·구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전화번호
17	190	200개소	
서울 (15)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02-2072-2020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02-2262-4800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장례식장	02-797-4444
	성동구	한양대학병원장례식장	02-2290-9442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장례식장	02-2030-7900
	종량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02-2276-7671
	도봉구	한일병원장례식장	02-901-3440
	노원구	태능성심장례식장	02-976-8811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장례식장	02-2030-4444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02-2650-5121
	영등포구	여의도성모장례식장	02-3779-1526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장례식장	02-860-3500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	02-2258-5940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02-3430-0226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례식장	02-440-8800
부산 (13)	중구	메리놀병원장례식장	051-465-1024
	서구	고신대병원 장례식장	051-990-6444
	영도구	주식회사구민장례식장	051-416-0004
	부산진구	(주)시민장례식장	051-636-4444
	남구	부산성모병원장례식장	051-933-7480
	북구	한중프라임장례식장	051-305-4000
	사하구	사하구민장례식장	051-715-4441
	금정구	부산영락공원	051-790-5000
	연제구	부산광역시의료원장례식장	051-607-2990
	수영구	(주)비케이더블유 좋은강안병원지점	051-610-9009
	사상구(3)	부산보훈병원장례식장	051-601-6785
		부산전문장례식장	051-312-4444
		삼신전문장례식장	051-323-0044
대구 (4)	동구	대구파티마병원장례식장	053-958-9000
	서구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053-560-9552
	북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053-200-2500
	달서구	계명대학교동산병원백합원	053-258-4444
인천 (8)	중구	인하대병원장례식장	032-890-3180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	032-580-6662
	미추홀구	송도하나장례문화원	032-832-4443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장례식장	032-822-1234
	부평구	인천성모장례식장	032-517-0710
	계양구	(주)세종병원장례식장	032-240-8444
	서구	국제성모장례식장	032-290-3501
강화군	강화장례식장	032-933-1024	
광주 (5)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장례식장	062-220-3352
	서구	(유)브이아이피장례타운	062-521-4444
	남구	광주남문장례식장(주)	062-675-5000
	북구	구호전장례식장	062-960-4444
	광산구	빛 장례식장	062-452-4000
대전 (5)	동구	한국병원장례식장	042-638-4440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장례식장	042-280-8181
	서구	대전을지대학교병원장례식장	042-611-3980

34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시·도	시·군·구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전화번호
	유성구	유성선병원장례식장	042-825-9494
	대덕구	대전보훈병원장례식장	042-933-4446
울산 (5)	중구	동강병원장례식장	052-241-1440
	남구	울산병원장례식장	052-227-1024
	동구	울산대학교병원장례식장	052-250-8444
	북구	울산시티병원장례식장	052-280-8400
	울주군	울산하늘공원(장례식장)	052-255-3800
	세종 (1)		서세종농협장례식장
경기 (31)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례식장	031-888-0114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장례식장	031-900-0444
	용인시	다보스병원장례식장(영문의료재단)	031-323-4444
	성남시(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031-787-1500
		성남시의료원장례식장	031-738-7450
	부천시	세종병원장례식장	032-346-1164
	화성시(2)	화성함백산장례식장	031-293-4244
		조암장례식장	031-358-4440
	안산시	(주)코스모스제일장례식장	031-406-2000
	남양주시	남양주한양병원장례식장	031-529-4440
	안양시(2)	안양메트로병원장례식장	031-449-9000
		안양장례식장	031-456-5555
	평택시	평택장례문화원	031-652-0404
	시흥시	시흥장례원	031-434-4114
	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례식장	031-940-9370
	의정부시	의정부성모장례식장	031-820-3468
	김포시	שלנך원김포장례식장	031-449-1009
	광주시	삼육병원장례식장	031-760-3644
	군포시	지샘병원장례식장	031-389-3000
	하남시	하남시 마루공원(장례식장)	031-795-2222
	오산시	오산한국병원장례식장	031-375-7600
	양주시	양주장례문화원	031-863-4444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례식장	031-630-4444
	구리시	원진녹색병원장례식장	031-552-5119
	안성시	성혜원장례식장	031-671-6500
	포천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례식장	031-539-9446
	양평군	양평장례식장	031-772-1024
	여주시	여주장례식장	031-885-1919
	동두천시	이담 장례식장	031-866-7300
	가평군	가평군농협효문화센터	031-581-4442
	연천군	연천군장례식장	031-832-4474
강원 (12)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장례식장	033-254-5611
	원주시	원주의료원장례식장	033-760-4644
	강릉시	강원도강릉의료원장례식장	033-610-1444
	동해시	중앙장례식장	033-521-3700
	속초시	강원도속초의료원 장례식장	033-630-6016
	삼척시	하늘정원장례식장	033-575-4441
	홍천군	홍천군장례식장	033-436-1919
	정선군	정선장례식장	033-562-4444
	철원군	철원병원장례식장	033-452-0044
	화천군	화천군공설장례식장	033-442-0452
	양구군	양구군장례식장	033-480-2576

시·도	시·군·구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전화번호
충북 (11)	양양군	양양장례문화원	033-671-0404
	청주시	청주시장례식장	043-291-4444
	충주시	충주영광장례식장	043-845-4444
	제천시	제천서울병원장례식장	043-644-4422
	보은군	보은농협장례식장	043-543-3360
	옥천군	옥천성모장례식장	043-730-7444
	영동군	영동장례식장	043-744-0454
	증평군	증평대한장례식장	043-836-7002
	진천군	진천성모병원장례식장	043-536-4499
	괴산군	괴산장례식장	043-832-4444
	음성군	농협연합장례식장	043-883-4444
충남 (15)	단양군	단양장례식장	043-422-4440
	천안시	천안의료원장례식장	041-570-7044
	공주시	공주의료원장례식장	041-962-1444
	보령시(2)	웅천장례식장	041-931-3444
		Sh수협장례식장	041-932-4004
	아산시(2)	배방장례식장	041-544-1500
		신정장례문화원	041-549-4441
	서산시	서산장례식장	041-664-4500
	논산시	논산시민장례원	041-733-0404
	당진시	당진장례식장	041-354-4444
	금산군	새금산병원장례식장	041-754-4474
	부여군	사비장례식장	041-835-4100
	서천군	서천장례식장	041-952-4402
	청양군	청양농협 장례식장	041-942-4600
	홍성군	홍성의료원장례식장	041-630-6244
태안군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	041-671-5303	
전북 (15)	전주시(2)	(유)예수병원장례식장	063-285-1009
		대송장례식장	063-274-4300
	군산시	(유)은파장례문화원	063-445-4444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장례문화원(천도장례식장)	063-855-1734
	정읍시	정읍아산병원장례식장	063-530-6644
	남원시	남원의료원장례식장	063-620-1140
	김제시	김제 중앙병원 장례식장	063-548-8844
	완주군	삼봉장례식장	063-261-4445
	진안군	진안군의료원장례식장	063-430-7070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장례식장	063-320-8337
	장수군	장수군보건의료원장례식장	063-351-8050
	임실군	임실 중앙장례식장	063-644-6666
	순창군	순창온누리장례식장	063-653-4482
	고창군	새고창장례식장	063-563-1001
	부안군	부안호남장례식장	063-581-1004
전남 (22)	목포시	삼목장례프리드	061-274-4441
	여수시	여수제일병원장례식장	061-692-4444
	순천시	순천의료원장례식장	061-759-9090
	나주시(2)	영산포농협장례식장	061-334-4440
		(주)예담 활주로장례식장	061-332-4441
	광양시	동광양장례식장	061-795-7700
	담양군	담양장례식장	061-383-4244
	곡성군	곡성장례식장	061-362-7575
구례군	(주)구례장례식장	061-782-0444	

36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시·도	시·군·구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전화번호
	고흥군	유한회사보람	061-830-3300
	보성군	보성아산병원장례식장	061-850-3444
	화순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례식장	061-379-7444
	장흥군	장흥병원장례식장	061-864-4444
	강진군	강진의료원장례식장	061-430-1004
	해남군	해남종합병원장례식장	061-533-4444
	영암군	영암농협장례식장	061-472-5544
	무안군	무안제일병원 무안장례식장	061-454-9340
	함평군	함평농협장례식장	061-323-4444
	영광군	영광종합병원장례식장	061-350-8044
	장성군	산림조합 장성장례식장	061-394-0444
	완도군	완도대성병원장례식장	061-554-4456
	진도군	진도군산립종합직업추모관장례식장	061-543-4040
경북 (18)	포항시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054-245-0444
	경주시	경주전문장례식장	054-744-4000
	김천시	김천의료원장례식장	054-429-8280
	안동시	안동의료원 장례식장 국화원	054-850-6440
	구미시	이래인장례식장	054-473-9650
	영천시	(주)영천장례식장	054-332-4000
	상주시	제일장례식장	054-531-4411
	문경시	문경제일병원장례식장	054-550-7948
	경산시	경산중앙병원장례예식장	053-814-0044
	의성군	공생병원장례식장	054-834-9906
	영양군	영양병원장례식장	054-682-0727
	청도군	청도농협장례식장	054-371-5525
	고령군	고령영생병원장례식장	054-956-4455
	성주군	성주효병원장례식장	054-933-1282
	칠곡군	칠곡군농협연합장례식장	054-976-9988
	예천군	예천농협장례식장	054-655-0990
	봉화군	해성장례식장	054-674-0015
	울진군	울진군의료원장례식장	054-785-7800
경남 (18)	창원시	창원시립상복공원장례식장	055-712-0930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례식장	055-750-8448
	통영시	송례관장례식장	055-643-1024
	사천시	사천공설장례식장	055-831-2668
	김해시	김해전문장례식장	055-331-4444
	밀양시	한솔장례식장	055-356-7213
	거제시	맑은샘병원장례식장	055-636-4800
	양산시	보람상조개발(주)양산부산대병원장례식장	055-372-4447
	의령군	부성장례식장	055-573-4500
	함안군	함안하늘공원장례식장	055-585-7180
	창녕군	창녕군공설장례식장	055-533-8510
	고성군	고성장례식장화라주식회사	055-672-5000
	남해군	남해병원장례식장	055-863-5444
	하동군	하동병원장례식장	055-884-7044
	산청군	(주)원지산청장례식장	055-974-1234
	함양군	함양장례식장	055-964-2000
	거창군	거창장례식장	055-944-4444
	합천군	(주)합천장례식장	055-932-7000
제주 (2)	제주시	그랜드부민장례식장	064-742-5000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064-730-3710

문고 답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족 및 문상객 관련

Q1. 코로나19 사망자는 꼭 화장을 해야 하나요?

- 효과적인 감염 예방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 장례방식과 절차는 유족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방역조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을 접견할 때 유족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원하는 방법으로 고인과의 애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신과 직접 접촉시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인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진 또는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시신과 시신백 등을 접촉하지 않으며 접견하기를 권고합니다. 단,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시신과의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름

Q3.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을 위한 장례식에 참석하면 감염될 위험이 있나요?

- 장례식 참석으로 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장례식과 관련한 감염위험은 다중이 밀집된 장소에 모였을 때의 감염위험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한 감염위험이 아닌, 장례식장 참석자 중 감염원이 있는 경우에 대한 감염위험에 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벗지 않으며, 짧은 시간 머무르는 것이 감염예방을 위해 권장됩니다.

Q4.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참석 시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 및 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씻기, 밀집도 완화, 환기, 소독 등 안내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준수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에 따름

Q5. 코로나19로 인한 고인의 유품을 간직할 수 있나요?

- 고인의 유품은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와 방수성 장갑을 착용하고 정리할 수 있으며, 간직하고 싶은 유품은 환경부에서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 사용 및 충분한 환기, 세탁물의 경우 세탁(온수세탁) 후 간직하기를 권고합니다.

장례업무 관련

Q6.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하여 주로 전파되며, 이러한 유형의 전파는 사망 후에는 감소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입, 코, 눈을 만지는 행위 혹은 시신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 고인의 호흡기로부터 비말입자가 포함된 공기가 유출되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직접 접촉하는 경우 적절히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손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사전에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선택, 사용방법과 착탈의 훈련을 받고 감염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수습 시 시신백은 꼭 사용해야 하나요?

- 시신백은 이동 시 시신의 체액이나 비말 등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신으로부터 체액유출이 많거나 장거리 이송, 대량 시신 처리 등의 경우에 이중 시신백을 권고합니다.

Q8. 코로나19 시신백을 이송하거나 입관된 상태로 운구하는 경우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코로나19 사망자를 시신백에 수습한 이후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시신백을 이송하는 사람 또는 입관후 운구하는 사람은 기본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 장갑을 착용하면 됩니다.

40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Q9. 코로나19 시신으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있나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식장 이용 후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이용을 기피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코로나19 시신에 의한 감염사례 보고 또는 감염증거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치른 장례식장 사용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의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장례식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참석한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합니다.